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21호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1 호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2 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2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3 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0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4 호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9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5 호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8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6 호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54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7 호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70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8 호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85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9 호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94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0 호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05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1 호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14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2 호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21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41호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범위 및 사업주의 협조(안 제4조, 제6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7조 ~ 제8조)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9조)
-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8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반미선.장덕수 의원
찬 성 자 : 황규진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범위 및 사업주의 협조(안 제4조, 제6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7조 ~ 제8조)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9조)
-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7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남동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5.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남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표창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사업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관내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지원사업, 우수기업 인증, 협력체계 구축 업무추진에 따라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우수기업 인증에 따른 지원,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김 정 훈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42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립예술단의 단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형위원 및 전형방법 신설(안 제27조~제28조)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9
----------	------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유광희·박정하 의원
찬 성 자 : 황규진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남동구립예술단의 단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단원 위촉 시 전형위원 및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7조~제28조)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6장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33조 앞에 “제7장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31조를 제33조로 하며, 제32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제35조로 하며,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35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6조를 제38조로 하며, 제37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8조를 제40조로 하며, 제39조를 제41조로 하고, 제40조를 제42조로 하며,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수시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전형 때마다 구성·운영한다.

제28조(전형방법)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0조)제3항 중 “제27조, 제28조”를 “제29조, 제30조”로 한다.

제3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축제의 육성 및 지원

제42조(종전의 제40조)제2항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략)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 5. (생략) <u><신설></u>	제8조(사업)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 3. ~ 5. (현행과 같음) <u>제27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수시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u> <u>② 전형위원은 예술단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u> <u>③ 전형위원은 전형 때마다 구성·운영한다.</u>
<u><신설></u>	<u>제28조(전형방법)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u>
<u>제27조 ~ 제29조 (생략)</u>	<u>제29조 ~ 제31조 (현행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u>
<u>제30조(위탁관리) ①·② (생략)</u>	<u>제32조(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u>

③ 예술단의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재단의 대표이사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그 밖의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장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

<신설>

제31조 · 제32조 (생략)

제7장 축제의 육성 및 지원

<신설>

제33조 ~ 제39조 (생략)

제40조(축제에 대한 평가 및 결산)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38조에 의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제29
조, 제30조-----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장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

제33조 · 제34조 (현행 제31조 및 제32조와 같음)

<삭제>

제7장 축제의 육성 및 지원

제35조 ~ 제41조 (현행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와 같음)

제42조(축제에 대한 평가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0조-----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27조(전형위원)에 따라 전형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참석 수당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27조에 따라 전형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연평균 1,400천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이 은 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43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다자녀 기준(3자녀→ 2자녀) 변경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자격을 수정·적용하여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수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아이모아카드”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자격 변경(안 제10조제4항)
- 그 밖의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30
----------	------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김은숙 의원
찬 성 자 : 이용우 의원 외 5명

☐ 제안이유

- 남동구 다자녀 기준(3자녀→ 2자녀) 변경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자격을 수정·적용하여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수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이모아카드”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자격 변경(안 제10조제4항)
- 그 밖의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운영 및 사용료”를 “운영 및 사용료”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일정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참가시”를 “참가 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아이모아카드”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혜택을 주는 카드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법」”을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에 위탁”을 “에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정은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를 “선정은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을 “소지한”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남동구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 ----- 운영 및 사용료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강습을 말한다.	7. ----- ----- 일정 기간----- -----.
8. “강습료”란 사용자가 프로그램 참가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 - 참가 시 ----- --.
<신설>	9. “아이모아카드”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혜택을 주는 카드를 말한다.
제6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	제6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

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공단 또는 단체(체육 또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⑤ (생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1. (생략)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

탁) ① -----
----- 관리·운
영을 「지방공기업법」-----

-----에 위탁
-----.

② (현행과 같음)

③ ----- 선정은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021. 11. 9.)

4. ~ 6. (생 략)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 12. (생 략)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4조(위탁의 철회) ① (생 략)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철회된 자는 2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4. ~ 6. (현행과 같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8.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소지한 -----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의 철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 일부 개정 시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구 세입감소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가. 기존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나. 개정(안)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아이모아카드 :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혜택을 주는 카드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기존 감면혜택을 받는 인원 및 금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643명, 8,994,700원임을 고려할 때 신규 감면혜택 금액이 연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함

※ 신규 감면혜택자 : 기존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 (조례 개정 시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6세 이상인 가정은 혜택에서 제외됨)

작성자 : 행정국 체육진흥과장 한 상 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44호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회 회의의 비공표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14조)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3조제3항제2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승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31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정승환·전용호·전유형 의원
찬 성 자 : 육은아 의원 외 1명

☐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회 회의의 비공표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14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록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비공표 규정 삭제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3조제3항제2호)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남동구 <u>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u>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u> ----- ----- -----.
제2조(기능) 남동구 <u>부동산 가격공시</u>	제2조(기능) ---- <u>부동산가격공시</u>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생략)

④ (생략)

제14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
니 된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7. -----
----- 한다-----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제>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1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상위법령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회의록 비공표 규정) 삭제와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예: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발의한 의안이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행정국 토지정보과장 남 석 진

[참고자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4. 7.]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45호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안 제5조)
-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6조)
-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7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재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32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김재남·이철상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안 제5조)
-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6조)
-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7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주차장법」
- 「대기환경보전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남동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남동구 및 남동구의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남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홍보비 등 한시적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미첨부

작성자 :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장 김 현 수

[참고자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삭제 <2020. 12. 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⑪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⑮ 제14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⑱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⑲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46호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난청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명시(안 제3조)
-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지원절차(안 제4조 ~ 안 제6조)
- 지원 대상자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안 제7조)
-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안 제8조)
- 지원 보청기의 사후관리(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33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성 난청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 난청 환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난청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명시(안 제3조)
-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지원절차(안 제4조 ~ 안 제6조)
- 지원 대상자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안 제7조)
-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안 제8조)
- 지원 보청기의 사후관리(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제4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의료급여법」 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제3조(보청기 구입비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 받은 사람

제6조(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청력상태	보청기 착용 전(진단서 결과)		
		우측		좌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격여부	☐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 급자) ☐ 미수급	청각장애 여부	☐ 비장애 ☐ 장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보청기 지원여부	☐ 미지원 ☐ 지원 (년도)
	남동구 1년 이상 거주		☐ 해당 ☐ 비해당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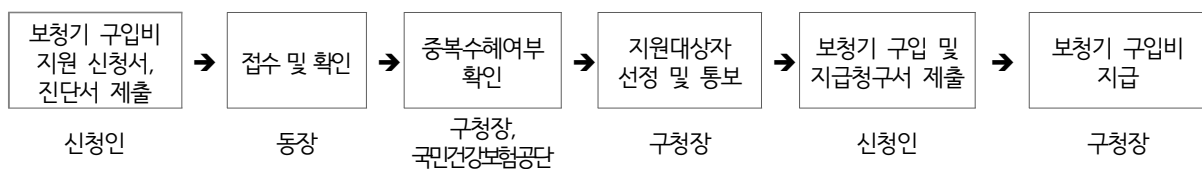
전화번호

남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진단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뒷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구로구 거주기간, 건강(청력상태)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지급청구서”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공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제공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여부 확인 (과거 장애인이었던 자에 한함)

○ 제공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①수급권자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구입일				
③ 보청기 제품 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④ 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⑤ 실구입금액		⑥ 본인부담액	⑦ 지급금액 (청구금액)	
원		원	원	
⑧수령인	⑨금융 기관명	⑩계좌 번호	⑪예금주	⑫생년월일
[]수급권자				
[]보청기 제조·판매자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⑬ 수급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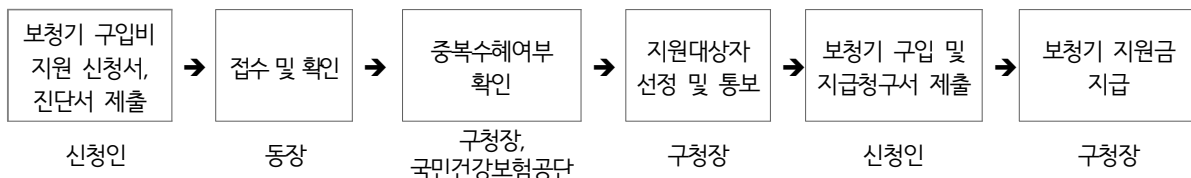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1. 보청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보청기 구입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②: 보청기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③: 구입한 보청기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④: 보청기를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합니다)를 적습니다.
- ⑤: 구입한 보청기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⑥: 구입한 보청기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 ⑦: 보청기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 ⑧: 보청기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보청기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보청기 제조·판매자 :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별지 제3호서식]

보청기 물품확인서

○ 수급권자 성명	
○ 생년월일	
○ 담당공무원 확인	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보청기사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3조, 제7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5천만원 미만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 ※ 노인성 난청 질환자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움
- 인천시 타구 및 타 자치단체 참고
 - 인천시 옹진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예산 총 9,000천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예산 총 30,000천원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조 미 화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10. 2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개정 2022. 12. 9.>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라. 보조기기는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이하“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조기기의 분류 및 유형 등

분류	유형	용도	구분
아. 그 밖의 보조기기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제1호나목 후단에 따라 급여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4. 그 밖의 사항

가. 보조기기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본다.

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내구연한은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기기의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신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47호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남동구 청소년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였음
- 이에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남동구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안 제5조)
-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시설의 확보 등(안 제6조, 제7조)
- 청소년 교류활동·문화활동·동아리활동 지원(안 제8조~제10조)
-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1조~제13조)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34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장덕수·박정하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남동구 청소년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였음
- 이에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남동구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안 제5조)
-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시설의 확보 등(안 제6조, 제7조)
- 청소년 교류활동·문화활동·동아리활동 지원(안 제8조~제10조)
-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1조~제13조)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남동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조직된 동아리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 활동비 등 제반 사항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육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육성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남동구의원
2.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이 있는 사람
3. 청소년지도자
4. 청소년단체의 장
5.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육성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남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③ 지도위원은 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제18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제3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를 한 사람
3. 지도위원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지도위원증 교부) 구청장은 위촉된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작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등의 사항(제20조 관련)

(앞면)	(단위:cm)	(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사 진 ⑤ ② ③ ④ ○ ○ 동 5.5×8.1	0.3 1 4 0.75 0.75 1 0.3 4.9×8.1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⑥ 남동구청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cm×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 경 미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20. 5. 19.>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19.>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2015. 6. 22., 2020. 5. 19.>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5. 19.>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48호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쓰레기 담으며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하여 남동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 장려와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지정(안 제6조)
-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정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35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이정순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쓰레기 담으며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하여 남동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 장려와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지정(안 제6조)
-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4조, 제5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행사
3.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및 단체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지정)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6월 5일(환경의 날)이 속한 주간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으로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라
 - 법인 및 단체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성자 :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장 박 홍 순

[참고자료]

□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49호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동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 (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 대상의 적용범위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실태조사 및 홍보사항 : (안 제7조 ~ 안 제8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침수 방z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황규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36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황규진·박정하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동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z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 (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 대상의 적용범위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실태조사 및 홍보사항 : (안 제7조 ~ 안 제8조)
- 침수 방z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 라.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수해 예방 노력) 남동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건물 등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지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밸브, 차수판) 설치 비용
- 관련조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 500,000천원(5년)
- 사업규모 : 역류방지밸브 1,600개, 차수판 125개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사 업 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50%, 구비 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작성자 : 도시국 치수과장 이 수 화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 차 년 도 (2025년)	3 차 년 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세 출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보조금	국비					
		시비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구 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

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2023. 4. 11.>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삭제 <2013. 8. 6.>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본조신설 2015. 7. 9.]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50호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계 법령 정비(안 제2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25
----------	------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전용호 의원
 찬 성 자 : 이연주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안 제2조)
-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안 제21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안 제30조제7항)
- 증인의 비용 지급 (안 제4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제6항, 제47조제3항, 제5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39조”를 “영 제41조”로 한다.

제30조제7항 중 “영 제43조제6항”을 “영 제46조제6항”으로 한다.

제41조 중 “영 제44조제3항”을 “영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부터 제54조 및 제56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제2조(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① -----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 ----- -----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1조(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의회는 법 제49조 및 영 제39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⑥ (생략)

⑦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영 제43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41조(증인의 비용 지급) 영 제4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는 증인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 영 제41조-----

-----.

제3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영 제46조제6항-----

-----.

제41조(증인의 비용 지급) 영 제47조제3항-----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유 재 필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51호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계 법령 정비(안 제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별첨

-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은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26
----------	------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김은숙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계 법령 정비(안 제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유 재 필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52호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무기명투표 표결 사항 정비(안 제41조 제2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6.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별첨

-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반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27
----------	------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김은숙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무기명투표 표결 사항 정비(안 제41조 제2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4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경우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표결방법) ① (생략)	제41조(표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u>	② ----- ----- <u>경우에는 무기명 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유 재 필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